
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.
발의자 : 최기상 · 기동민 · 장경태
박상혁 · 박찬대 · 진선미
임호선 · 윤영덕 · 박홍근
이동주 · 김용민 · 임종성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관리청)은 소하천을 지정하고, 소하천,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관장하며,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 · 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“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”)를 하고,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(법 제3조 및 제26조의2). 하지만, 동 법률상 특별자치시장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우 이를 수립하여 시 ·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,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에도 시 ·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 · 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행정안전부뿐 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소하천의 관리실태 및 조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고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).
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 중 “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”를 “시·도지사를 거쳐(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)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